

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8.24		16		
2	2021.3.29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(이하 ‘우리 대학원’ 이라 한다)과 협정을 맺은 국내·외 타 대학교 대학원(이하 ‘상대 대학원’ 이라 한다) 및 본교 내 학과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24.>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교육과정 공동운영’ 이라 함은 우리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과 과정을 국내·외 타 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8.24.>
2. ‘공동학위(Joint Degree)’ 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3. ‘복수학위(Dual Degree)’ 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4. 교내 복수학위란 신청학생이 소속한 학과와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학과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복수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 <신설 2020.8.24.>
5. 융합학과란 학문간 융합을 목적으로 신설된 학과를 말한다. <신설 2020.8.24.>
6. 복수학위학과란 원 소속학과 외에 추가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를 말한다. <신설 2020.8.24.>

제2장 국·내외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

제3조 (운영주체 및 협정체결) ① 제2조제1호의 ‘교육과정 공동운영’ 은 본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교 대학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20.8.24.>

② 제2조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20.8.24.>

③ 협정서에는 국내·외 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분야를 명시

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4.>

④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 (지원자격 및 선발)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 간 협정서에 따른다.

제5조 (수학기간) 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대학원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최소 1년(2학기) 이상으로 한다.

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 (교과과정의 이수) ① 우리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, 양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우리 대학원의 상대 대학원 학점인정의 범위는 대학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른다. (최대 12학점 인정)

1.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대학원생은 상대 대학원에서의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, 우리 대학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상대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.

③ 상대 대학원의 우리 대학원 학점 인정의 범위는 대학간에 체결한 협정서의 학점인정 범위에 따른다.

제7조 (등록) 본 규정에 의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학기 우리 대학원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.

제8조 (장학금)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학위논문 자격시험 면제)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대학간 협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 (학위취득 요건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협정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학위논문으로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협정에 따라 상대 대학에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본 대학 학위논문 심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제출한 논문을 우리 대학원의 학위로만 인정할 수도 있다.

④ 복수학위의 논문은 두 대학에서 모두 보관 관리한다.

제11조 (협정서) 협정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교내 복수학위 <장 신설 2020.8.24.>

제12조 (교내 복수학위 과정) 교내 복수학위(이하 ‘복수학위’ 라 한다)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실시한다.

제13조 (지원자격) 복수학위 지원은 융합학과 소속 학생에 한하며, 교과학점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21.3.29.>

제14조 (신청방법 및 승인) ① 복수학위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
② 복수학위 신청자는 복수학위학과에서 자격 및 학점인정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친 후,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. <개정 2021.3.29.>

제15조 (교과과정, 이수학점) ①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각각 24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지도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하며, 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융합학과로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 학과로 복수학위를 하는 경우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을 복수학위학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6조 (학점인정) 융합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18학점까지 복수학위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29.>

제17조 (자격시험) ①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는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이 있다.

②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 각각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

1. 교과학점 15학점 이상(학점인정 교과 포함)
2. 성적의 평점평균 3.0 이상

③ 영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 각각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18조 (논문제출 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자
2. 교과학점을 24학점(당해학기 취득 예정 및 학점인정 포함)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3. 연구지도학점 8학점을 취득한 자
4. 영어시험,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5. 융합학과 및 복수학위학과에서 각각 설정한 연구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
6.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

제19조 (학위취득 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가진다.

1. 소정의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2. 수업연한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
3.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. 단, 복수학위학과의 논문심사에

서 합격한 경우 융합학과는 교과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19조의 2 (복수학위수여 보류) 복수학위학과의 학위취득 자격을 취득하고 융합학과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학위학과의 학위수여를 보류한다. <조 신설 2021.3.29.>

제20조 (복수학위의 중도포기) ① 복수학위를 중도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복수학위를 포기하는 경우 융합학과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4장 준용 규정

제21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와 상대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따른다.

[중전 제12조에서 제21조로 변경 <2020.8.24.>]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」은 폐지한다.
3.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